

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4. 4. 22.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. 4. 30.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
(2004. 5. 12)에 상정의결

2. 제 안 설 명 요 지 (제안설명 : 도시건축과장 김 인 수)

가. 제 안 이 유

- 2004. 1.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과, 종전 김제시 도시계획조례를 현실에 맞추어 보완·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범위확대 (안 제9조제3호·제4호 개정, 제7호·제8호 신설)
-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창고시설 설치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제곱미터 내에서 가능토록 함. (안 별표4 제2호 자목 개정)
-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 허용.
(안 별표19 제2호, 별표23 제2호 개정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2004. 1.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 변경되었고,
-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창고시설 건축시 너비 15미터이상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일 경우에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제곱미터 이하까지 예외로 완화.
- 또한, 토지이용 효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지역의 하수도 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·운영되는 지역으로 관리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,
- 검토결과,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 (위원 임형규)
 - 다른 시·군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휴게 음식점, 일반음식점을 허가해 주는데 김제시는 그동안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가 이제 와서 “각호의 지역”을 “각호의 1의”지역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, 각호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?
- 답변 (도시건축과장 김인수)
 - 타 시·군이 개정하지 않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. 개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5. 토 론 요 지

○ 임형규 위원

-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행위 제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민편의를 위해 통과시켜야 합니다.

6. 심 사 결 과

- 표결결과, 재적위원 9명 위원 중 9명 위원이 참석하여, 찬성 8명.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.